

(비공식 번역본)

## 투자위원회 고시

제Por.5/2559호

###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에 관한 규정

-----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7조에 따라 투자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투자청은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 고시문은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7조에 따라 투자 촉진 및 투자 촉진 프로젝트에 관한 신청자에 적용된다.
2. 이 고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 관련 기타 절차 및 방안은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이 고시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투자청을 의미한다.

“이용자”는 투자 촉진을 신청하려는 업체와 업체를 의미한다.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 신청서 양식”이란 전자 시스템을 통한 투자촉진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의미하며,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투자 촉진 신청서, 프로젝트 수정 요청서, 촉진 인증 신청서 등과 같은 정보와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시스템”이란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용자명”이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할 이용자의 아이디를 의미한다.

“비밀번호(패스워드)”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이용자의 아이디를 증명할 비밀번호를 의미한다.

## 제1조

###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의 사용절차

4.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한 투자 촉진 서비스 신청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을 통해 투자 촉진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 절차에 관한 고시문에 명시된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4.2. 이용자는 시스템에 로그인 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생성하기 위해 전자투자촉진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4.3.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전자 투자 촉진시스템을 통한 투자촉진 서비스 신청 절차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4.3.1. 법적으로 정보를 원본 형태로 제시하거나 보관해야 할 경우, 관리자가 해당 정보를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따라 정보 메시지 형태로 보여주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법에 따라 원본 서류대로 제시 또는 보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전자 정보의 생성 순간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내용이 올바른지 보장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전자 정보

(2) 해당 정보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1)의 정보의 완전성은 작성해야 할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변경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단, 정보의 통신, 저장이나 표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승인, 기록이나 변경과 같이 정보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제외한다.

(1)에 따른 정보의 완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때 해당 정보 생성 목적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환경들을 고려한다.

4.3.2 4.3.1번의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특정 서류 또는 정보의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다음 요건에 따라 정보 메시지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다면, 법률 요건에 따라 서류 또는 정보가 저장·보관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1) 전자 정보는 변경사항 없이 추후에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다.

(2) 전자 정보는 생성 또는 전송된 형식으로 보관되거나 생성 또는 전송된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지된다.

(3) 송수신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정보 메시지의 출처, 출발지 및 목적지를 지정하는 정보는 저장·보관된다.

4.3.3.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관리자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4.5번 항목에 따른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해 투자촉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한다.

- 4.4 이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사용자명 또는 비밀번호)을 획득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제3자가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관리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건이 아닌 경우, 관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4.5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해 투자 촉진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용자는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에서 신청서에 기재할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관리자가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및 기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6 이용자는 투자 촉진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 또는 기타 입증 자료가 정확한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리자(service provider)가 서류 또는 기타 입증 자료를 정부 소유로 보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관리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관리자에게 구비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4.7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 사실임을 확인한 후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그 정보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 4.8 전자 정보 전송의 보안을 위해, 이용자는 이용자의 실무 운영자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밀 정보로 취급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것이 아닌 제3자에게 어떠한 수단으로도 해당 기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거나 승인해서는 안된다.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4.9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 4.9.1 정보 전송에 사용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분실, 훼손, 변경, 노출, 혹은 사용된 것을 이용자가 알게 된 경우
  - 4.9.2. 정보 전송에 사용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분실, 훼손, 변경, 노출, 혹은 사용되었을 환경의 위험성이 높ی 제기될 경우.이용자는 위 위험성에 따른 이유를 관리자에게 통지하기 전, 관리자에게 전달된 전자 정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이유로 들 수 없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먼저 통지한 후 그 다음 업무일에 관리자에게 서신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된 '정보 전송에 사용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분실, 훼손, 변경, 노출, 혹은 사용되었을 환경의 위험성이 높이 제기될

경우'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되면, 관리자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했던 사항들을 즉시 취소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투자 촉진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10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전자 형식 또는 다른 대체 형식으로 응답할 때만 관리자가 이용자의 전자 정보를 수신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의 응답은 제출된 전자 정보가 완전하게 기재되었는지 관리자가 확인했거나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11.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4.11.1 제출된 전자 정보가 제출된 후 변경 또는 수정되었거나 제출된 전자 정보의 전송을 관리하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와 관련하여 불규칙성이 있다고 기술 정보에서 제시하는 경우

4.11.2 수신된 전자 정보가 제출 당시에 유효한 이용 설명서에 명시된 기술적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관리자가 전자 정보를 수신 거부할 경우, 관리자는 즉시 전자 형태 또는 기타 대체 형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12 관리자는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수락하기 전에 투자 촉진 서비스 신청서가 모두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모든 정보가 제출된 경우,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신청서 접수를 통지한다. 제출된 정보들이 불완전 하다면,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4.13. 전자 정보 전송 관련

4.13.1. 이용자의 실무 운영자가 정보를 제출할 때, 관리자 서버에 표시된 시간을 제출 시간으로 간주한다. 관리자가 정보를 수신할 때 관리자 서버에 표시된 시간은 정보 수신 시간이다.

4.13.2. 이용자의 본사는 정보 제출 지역으로 간주한다. 관리자의 본사는 정보 수신지역으로 간주한다.

4.14. 4.13항에 따라 관리자가 전자 정보를 수신한 날짜와 시간은 이용자가 검증을 위해 전자 정보를 제출한 날짜로 간주한다. 관리자는 제출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보가 제출된 날과 같은 날에 신청서 접수를 확인한다. 관리자가 신청서 접수 확인을 당일에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다음 날 자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투자 촉진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리자와 어떤 사항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항들이 관리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자 정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한 투자 촉진 서비스 신청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하다.

4.15.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로 인해 관리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관리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6 관리자가 정한 규정을 이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한 투자 촉진 서비스 신청을 검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2조

###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의 범위

5. 이용자는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에서 다음 서비스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1. 투자 촉진 신청

5.2. 촉진 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한 투자 촉진 신청 프로젝트에 한함)

- (1) 촉진 수락 연장 양식
- (2) 촉진 수락서
- (3) 촉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일의 연장 신청서
- (4) 촉진 인증서 발급 양식

5.3. 프로젝트를 수정하기 위해 이용자는 다음의 양식들을 제출해야 한다.

- (1) 주주 지분 비율 변경 허가 요청 양식
- (2) 프로젝트 지역 수정 요청 양식
- (3) 등록 자본금 수정 요청 양식

(4) 추가 생산 능력 요청 (업무 시간 증가에 따른 사항)

### 제3조

####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 발생 시,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 사용 절차

6.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 서비스를 방해하는 관리자 또는 업무 위탁 기관의 컴퓨터가 오작동이 발생하고,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서면 양식으로 서비스를 대체한다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알린 경우, 사용자는 관리자가 규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투자 촉진 신청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컴퓨터 또는 기술적 오작동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7. 투자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을 통해 투자 촉진 신청 절차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 투자 촉진 시스템에서 출력되지 않은 투자 촉진 신청 서비스, 즉 기존의 서면 양식으로 진행되던 서비스는 2017년 1월 1일부로 종료한다.
8. 이 고시문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청 청장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일 2016년 9월 30일

(Hirunya Suchinai)

투자청 청장